

학사학위 학과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12. 12. 1

개정 2016. 3. 1

개정 2019. 10. 28.

개정 2022. 2. 2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과별로 설치되는 학사학위 학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의 입학전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입학사정에 관한 사항
3. 학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학과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5. 학과의 졸업사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과와 관련된 제반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에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의 학과장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학과 교수 및 관련 산업체 임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산업체 임직원의 구성비를 50% 이상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총장이 임명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진행 중인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